

남 동 구
구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관의 장

제1895호
2024년 4월 9일
화요일

공 고

- 공 고 제 7 2 9 호 「남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 업 지 원 과 2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 공 고 제 7 3 7 호 「남동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복 지 정 책 과 8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 공 고 제 7 4 7 호 「남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 획 예 산 과 15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회 람								
--------	--	--	--	--	--	--	--	--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4-729호

「남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4월 8일

남 동 구 청 장



남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존속기한 만료예정(2024. 12. 31.)인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한 존속기한 조례정비를 통해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제고

2. 주요내용

- 중소기업육성기금 존속기한 정비(2029. 12. 31.)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년 4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참조 : 기업지원과장)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fax 전송 시 담당자에게 유선통보 요망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청 기업지원과 / ☎ 453-8483, FAX 453-5169)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개정조례(안) 및 참고자료 : 별첨

남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24년 5월 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자치단체 재량으로 설치한 기금은 조례에 존속기한을 명시하여야 하며, 존속기한 만료 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존속기한을 연장토록 되어 있는바, 존속기한 만료예정(2024.12.31.)인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존속기한 조례정비를 통해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기금 존속기한 정비

☐ 본 문 :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참고자료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 제1268호 남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 2조 전단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조례 제1268호 남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부칙	조례 제1268호 남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부칙
제2조 (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 지로 한다.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이 가능하 다.	제2조 (기금의 존속기한) ----- ----- 2029년 12월 31일-- -----. ----- ----- ----- --.

[참고자료]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4.>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 7. 24.>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5. 7. 24.>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5. 7. 24.>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4-737호

「남동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남동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4월 8일

남 동 구 청 장

1. 개정이유

-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자치단체 재량으로 설치한 기금은 조례에 존속기한을 명시하여야 하며, 존속기한 만료 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존속기한을 연장토록 되어 있는바, 존속기한 만료예정(2024.12.31.)인 사회복지기금에 대한 존속기한 조례 정비를 통해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기금 존속기한 정비
 - 2024년 12월 31일로 명시된 사회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을 2029년 12월 31일로 연장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 4. 28.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남동구청장(복지정책과장)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다. 기타사항

라. 보내실 곳

○ 주 소 :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만수동),
남동구청 복지정책과

○ 연 락 처 : 전화 453-2505 FAX 453-2579

○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입법예고)

(※ FAX 전송 시 담당자에게 유선통보 요망)

4. 참고자료

○ 남동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

남동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24년 5월 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 수급자 자활 지원 및 노인복지 사업 추진을 위해 설치된 사회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이 2024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남동구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을 지원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공동체의식 함양과 더불어 사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주요내용

- 2024년 12월 31일로 명시된 사회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을 2029년 12월 31일로 연장

☐ 본 문 :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참고자료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 1701호 남동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제3조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조례 제1701호 남동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부칙 제3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u>2024</u> <u>년 12월 31일까지</u> 효력을 가진 다.	조례 제1701호 남동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부칙 제3조(유효기간) ----- <u>2029년</u> <u>12월 31일</u> ----- --.

[참고자료]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약칭: 지방기금법)

[시행 2023. 7. 10.] [법률 제19430호, 2023. 6. 9., 타법개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4.>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 7. 24.>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5. 7. 24.>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5. 7. 24.>

[전문개정 2011. 5. 30.]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4-747호

남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남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4월 9일

남 동 구 청 장

1.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의안번호 제2023-793호)에 따라 남동구 통합 재정안정화기금의 관리·운용 합리성 제고를 위한 운용체계를 개선하고자 함.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재정운용의 안정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운용자금의 효율적 관리 의무 명시 : 안 제5조
- 통합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내실화 : 안 제6조, 제7조
- 기금 존속기한 5년 연장 : 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청장(기획예산과장)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 보내실 곳

- 주 소 :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청 6층 기획예산과
- 연락처 : ☎ 453-2067, FAX 453-2059
-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입법예고)

4. 참고사항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 의안번호 제2023-793호
- 「지방재정법」 제9조의2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제16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

남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24년 4월 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의안번호 제2023-793호)에 따라 남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관리·운용 합리성 제고를 위한 운용체계를 개선하고자 함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재정운용의 안정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운용자금의 효율적 관리 의무 명시(안 제5조)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운영 내실화(안 제6조, 제7조)
-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4년12월31일”에서 “2029년12월31일” 까지 5년 연장(안 제10조)

☐ 본 문 : “별첨”

☐ 신 · 구조문대비표 : “별첨”

☐ 참고자료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 의안번호 제2023-793호
- 「지방재정법」 제9조의2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제16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설치하여”를 “설치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로 한다.

제6조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이자액 등)을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통합기금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심의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1.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
2. 심의위원회 주요 심의·의결 내용
3.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변경사항 등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되며,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를 “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 중 “있으며, 간사는 통합기금 업무담당이 된다”를 “있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2호에 해당하는 민간전문가가 전체 위원의 3분의 1이상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통합기금과 관련된 기금의 기금운용관
2.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적 식견을 갖춘 사람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 두며, 간사는 통합기금 업무담당
이 된다.

제10조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합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되거나 임명된 남동구 통합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남동구 통합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거나 임명된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통합기금의 관리·운용) 통합기금을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른 남동구 금고(이하 “구 금고”로 한다)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하고, 통합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제5조(통합기금의 관리·운용) -- ----- ----- ----- --- <u>설치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u> -----.
제6조(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생략) ② 심의위원회는 통합기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 4. (생략)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제6조(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 4. (현행과 같음) 5. <u>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u> ③ <u>제2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이자액 등)을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u> ④ <u>통합기금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심의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u> <u>1.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u> <u>2. 심의위원회 주요 심의·의결</u>

제7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생략)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통합기금업무 담당부서의 국장이 되며,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 1. 통합기금과 관련된 기금의 기금운용관
 -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하는 사람
- <신 설>

내용

3.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변경

사항 등

제7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 된
다.

<삭 제>

<삭 제>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2호에 해당하는 민간전문가가 전체 위원의 3분의 1이상 되도록 하여야 한다.

- 1. 통합기금과 관련된 기금의 기금운용관
- 2.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적 식견을 갖춘 사람
-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u>간사는 통합기금 업무 담당이 된다.</u> <u><신 설></u> ④ (생 략) 제10조(존속기한)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은 <u>2024년 12월 31일까지</u>로 한다.	④ ----- ----- 있다. ⑤ <u>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 두며, 간사는 통합기금 업무담당이 된다.</u> ⑥ (현행 제4항과 같음) 제10조(존속기한) ----- ----- <u>2029년 12월 31일</u>----- -----.
--	---

[참고자료]

□ 국민권익위 제도개선 권고사항

구 분	조치사항	해당기관	조치기한
① 공금예금계좌 개설·운영	- 입·출금이 제한되는 공금예금 계좌 개설 - 통합·재정안정화계정을 모두 운용하는 경우 계정별로 구분 개설	243개 지자체	'23.12.
② 통합기금 효율적 관리 의무규정 신설	- 고금리 예금 예치 등 효율적 운용·관리 의무 명시 - 효율적 관리 의무를 통합기금 관련 조례에 명시 ※ 통합기금 관련 조례 개정	243개 지자체	'24.6.
③ 재정안정화계정 적립 확대를 위한 규정 개정	-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에 포함 - 기금심의위원회 심의사항에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포함 ※ 통합기금 관련 조례 개정	243개 지자체	'24.6.
	- 재정안정화계정 적립기준 완화 - 통합기금 관련 조례에 재정 안정화계정 적립요건을 엄격 하게 설정하고 있는 경우 적립기준 완화 ※ 통합기금 관련 조례 개정	243개 지자체	'24.6.
④ 통합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내실화	- 비(非) 기금 통합 심의위원회의 심의 대행 금지 - 기금 관련 통합 심의위원회가 아닌 일반 심의위원회에서의 대행 금지	243개 지자체	'24.6.

구 분	조치사항	해당기관	조치기한
	※ 통합기금 관련 조례 개정		
	▪ 민간전문가 비율 미준수 시 기금운용 성과분석 평가에 반영 - 민간전문가 비율 1/3 미만에 대한 감점기준 신설 ※ 「지자체 기금운용 성과분석 기준」 중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적정성’ 세부기준에 규정	행정안전부	’24.6.
	▪ 심의내역 및 금융기관 세부 예치현황 관리 강화 - (심의내역)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내역 관리의무 명시 - (예치현황) 통합기금 심의자료에 금고 세부 예치현황 작성 ※ 통합기금 관련 조례 개정	243개 지자체	’24.6.

□ 지방재정법

제9조의2(회계·기금 간 여유재원의 예수·예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 또는 조례에도 불구하고 회계 및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회계와 기금 간, 회계 상호 간 그리고 기금 상호 간에 여유재원 또는 기금 예치금을 예탁하거나 예수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여유재원의 예탁 및 예수와 기금 예치금의 예탁 및 예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6. 9.]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

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4.>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 7. 24.>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5. 7. 24.>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5. 7. 24.>

[전문개정 2011. 5. 30.]

제16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또는 각종 회계·기금 운용 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통합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이 조에서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③ 통합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④ 재정안정화 계정은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재원으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은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⑤ 재정안정화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회계로의 전출
2. 지방채 원리금 상환

⑥ 지방자치단체가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 중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기금의 조성, 용도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0. 6. 9.]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기금운용심의위원회”라 한다)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